이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소관부서 : 의회사무과

제정 2024 · 7 · 1 조례 제2095호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천시의회에 의정모니터 단을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이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(이하 "모니터단"이라 한다)이란 이천시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하고, 시민 불편 사항이나 제도 개선사항 등을 제보 또는 건의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.
- 제3조(역할) 모니터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 및 의견제시
 - 2. 조례 등 자치법규의 제 · 개정 및 폐지와 관련한 건의
 - 3. 의회 방청 및 홈페이지 모니터링
 - 4. 그 밖에 의정 발전에 관한 사항
- 제4조(구성 등) ① 모니터단은 이천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인 사람 중 지방자치에 관심이 있고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.
 - ② 단원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, 이천시의회 의장(이하 "의장"이라 한다)이 위촉한다. 다만 의장은 지역별·연령별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 - ③ 모니터단 단원의 정원은 20명 이내로 한다.
 - ④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 - ⑤ 단장은 모니터단 단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.
- **제5조(해촉)** ① 의장은 모니터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.
 - 1.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
 - 2.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때

이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- 3. 모니터단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켰을 때
- 4. 6개월 이상 의정 모니터링 활동을 하지 않은 때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촉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로 위촉할 수 있으며, 추가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해촉된 사람의 잔여임기로 한다.

제6조(회의 및 의견 처리) ① 정기회의는 상·하반기 연 2회 개최한다.

- ② 모니터단의 의정활동 모니터링 과정에서 제안하는 사항과 수집한 민원 사항으로 의장 및 의원에게 간담회를 요구할 수 있다.
- ③ 의장은 간담회에서 모니터단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성실히 검토해야 한다.
- ④ 의회에서 직접 해결하기 어려운 사항은 이천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에게 이송 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, 시장은 이를 성실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 보해야 한다.
- 제7조(모니터단 활동지원) ① 의장은 모니터단 활동을 지원하거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회의 또는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.
 - ② 의장은 모니터단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, 모니터단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③ 제6조에서 정한 회의에 참여한 모니터단원에게는 「이천시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- **제8조(포상)** 의장은 모니터단 활동에 적극적이고 우수한 단원에 대해 「이천시의회 포상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- 제9조(위임규정) 이 조례 이외의 모니터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